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

영동군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를 합니다.

2023. 12. 07.

영 동 군 수

1. 목 적 :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수렴

2. 예고방법 : 영동군청 홈페이지(http://www.yd21.go.kr)게재

3. 예고기간 : 2023. 12. 07. ~ 2023. 12. 26.(20일간)

4. 관련근거

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,「행정절차법」시행령 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
5. 노인보호구역 지정시설 및 위치(붙임1 참조)

구 분	시 설 명	위치	비고
지 정	구촌2리 경로당	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347	지방도 514호선
지 정	동문동 경로당	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605	지방도 514호선
지 정	신탄1리 경로당	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 416-4	군도 5호선
지 정	궁촌1리 경로당	영동군 상촌면 궁촌리 346-6	지방도 901호선
지 정	돈대리 경로당	영동군 상촌면 돈대리 215	국지도 49호선
지 정	하고자리 경로당	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164	국지도 49호선
지 정	지내 경로당	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600-3	지방도 901호선
지 정	초강리 경로당	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255	지방도 505호선

6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붙임2)를 영동군 건설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, 반 여부와 반대 의견 시 그 이유)
- 나.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(043-740-3509)
- 다. 제출장소 :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청 건설교통과
- 라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영동군 건설교통과(☎043-740-3543)
- 마.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【붙임 1】

1.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(구촌2리 경로당)







시점 :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383-39	종점 :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424-5

위 치	용산면 구촌리 347	시 설 명	구촌2리 경로당
사진설명	노인보호구역 지정	지정구간	L=300m

【붙임 1】

2.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(동문동 경로당)



시점 : 영동군 용산면 한곡리 181-3			종점 : 영동군 용산면 매금리 735-7		
위	치	용산면 한곡리 605	시 설 명	동문동 경로당	
사진설명		노인보호구역 지정	지정구간	L=400m	

【붙임 1】

3.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(신탄1리 경로당)







시점 :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 419-1 종점 :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리 175-1

위 치	황간면 서송원리 416-4	시 설 명	신탄1리 경로당
사진설명	노인보호구역 지정	지정구간	L=300m

【붙임 1】

4.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(궁촌1리 경로당)



5.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(돈대리 경로당)







시점 : 영동군 상촌면 돈대리 229-3 			종점 : 영동군 상촌면 돈대리 279-2 		
위	치	상촌면 돈대리 215	시 설 명	돈대리 경로당	
사진	설명	노인보호구역 지정	지정구간	L=500m	

6.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(하고자리 경로당)







시점 :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190-4

종점 :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88-2

위 치	상촌면 고자리 164	시 설 명	하고자리 경로당
사진설명	노인보호구역 지정	지정구간	L=350m

7.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(지내 경로당)







시점 : 영동	등군 학산면 지내리 545-4	종점 :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525-3		
위 치	학산면 지내리 600-3	시 설 명	지내 경로당	
사진설명	노인보호구역 지정	지정구간	L=350m	

8. 노인보호구역 지정 위치(초강리 경로당)







시점 :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314-1 종점 :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242-5

위 치	심천면 초강리 255	시 설 명	초강리 경로당
사진설명	노인보호구역 지정	지정구간	L=500m

【붙임 2】

의 견 제 출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					
이거제중이	성명				
의견제출인	주소			전화번호	
	① 예정된 처분의	제목			
	노인보호구역	역 지정에 따른 :	의견 수렴		
		성명(명칭)			
	당사자	주소			
의견제출			(전화번	년호:	
내용	의 견				
	기타				
	71 51				
「행정절차	법」 제27조제1형	당(제31조제3항)에	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	제출합니다.	
				년	월 일
		의견제출역	인	(서	명 또는 인)
영등	통군수	귀하			

유의 사항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